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20재나3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]

전 문

원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

담당변호사 심형섭

피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C
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4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. 1. 27. 선고 2014가단1855 판결

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. 11. 11. 선고 2015나1693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,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
 1. 청구취지피고(재심원고, 이하 피고라 한다)는 원고(재심피고, 이하 원고라 한다)에게 광주 동구 F
때 538.9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ㄹ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대로
연결한 선내 (나) 4.9㎡ 부분과 ㄷ, ㄴ², ㄱ², ㅎ, ㅎ, ㄱ, ㄴ, ㄷ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(마)
11.5㎡부분(이하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이라 한다)의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각 토지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재심대상판결의 확정

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원고는 2014. 1. 13.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855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. 27.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나1693호로 항소를 하였고, 위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축탁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철거 및 인도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, 위 법원은 2015. 11. 1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(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. 11. 30. 대법원 2015다73982호로 상고하였으나, 2016. 3. 24.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2.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는,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측량감정을 담당한 감정인이 지적도를 기준으로 현장에 경계를 복원하여야 함에도 지적도의 경계선과 다른 기준점을 적용한 축탁결과를 제출하였고, 위 측량감정 결과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“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”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“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

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,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, 판사 박정운

감 정 도

토 지 소 재	광주광역시 동구 [] 6필	
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

사건번호 : 2014가단 18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

참 고 도

토 지					
지 번	지 목	부 호	내 용	면적(㎡)	비고
[]	대지	(가)	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, ㉪, ㉫, ㉬, ㉭, ㉮, ㉯, ㊀, ㊁, ㊂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(가)부분	494.8	원고소유부분
		(나)	㉬, ㉭, ㉮, ㉯, ㊀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(나)부분	4.9	피고 청병부분
		(다)	㉰, ㉱, ㉲, ㉳, 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(다)부분	8.1	피고 침범부분
		(라)	㉵, ㉶, ㉷, ㉸, ㉹, ㊃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(라)부분	4.1	피고 침범부분
		(리)	㉺, ㉻, ㉼, ㉽, ㉾, ㊄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(리)부분	11.5	피고 침범부분
		(로)	㉿, ㊀, ㊁, ㊂, ㊃, ㊄, ㊅, ㊆, ㊇, 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(로)부분	15.5	피고 침범부분

비 고
※ 본 감정도는 측량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